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2022-07

수시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Ordinance
for th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김연진
김윤경



수시연구 2022-07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Ordinance for th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김연진·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보장하고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로 제정되었음.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되도록 한다고 문화영향평가의 수행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현재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부터 결과 환류까지 평가 수행에 단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평가 수행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됨
-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거나 임기만료로 폐기 되는 등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따라서 향후 평가 대상의 확대 및 다양화, 평가 유형 및 평가 절차의 정교한 설계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및 구체적 내용의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기본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등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 절차,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 이후,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계획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나.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법안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의 변화, 개정 이유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검토하며, 2018년 입법예고되었던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2020년 12월 유정주 및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을 주요하게 살펴봄
- 내용적 범위 :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안 및 이슈분석, 문화영향평가 대상·수행절차·수행체계 주요 내용구성,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단행본, 학술논문, 관련 법령 및 개정안 내용을 통한 현재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이슈 검토, 문화영향평가 및 유사영향평가에 대해 평가 대상 및 전반적인 수행 체계와 관련한 법령 내용 비교 분석,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 체계의 현황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자문 : 법제 전문가의 특별 원고자문을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작성 및 내용 검토,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서면자문을 실시함

2.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안 분석 및 주요 이슈

가. 추진 현황 및 제도 변화

1)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황

- 문화영향평가는 2003년에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여 2013년 근거법률인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2014년에 시범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본평가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21년까지 197건의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전국 118개 지역(광역시·도 포함 시·군·구)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중앙부처 계획과 사업을 평가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에서, 문화영향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제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협력체계를 통하여 협의를 거친 경우에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여, 강제성 보다는 요청에 의한 평가 수행 방식으로 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정책소관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와 평가수행 담당자에게도 필요시 교육을 진행함.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관련 세부 규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견 청취),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와 위임행정규칙(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함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행의 강제성 보다는 요청이나 협의에 의해 진행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함
- 그러나 평가대상 및 선정기준, 평가 유형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오

2) 「문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문화영향평가 관련하여 정부는 2018년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차례 의원발의 되었음
- 2018년 입법예고되었던 시행령안은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특정문화영향평가 실시, 평가 결과 제출 및 개선의견에 대한 권고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하였음
- 제 21대 국회에서 안민석의원안과 유정주의원안이 동시에 법안 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정주의원안을 중심으로 통합 수정안을 작성하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2021.06.23.)에 상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음
- 유정주의원안은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기본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서 및 반영 결과 제출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문화영향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나. 문화영향평가 관련 이슈 및 쟁점

1) 문화영향평가 대상

-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제시하였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나 협력체계를 통하여 협의의 거친 경우에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 이처럼 정책소관기관의 수요에 기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대상 모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연간 이루어질 평가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특정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문화기본법」 상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핵심 정책 사업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구도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사업 단위로 법에 규정하는 것이, 향후 법의 잦은 개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행정의 근거로서 모든 국가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영향 범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짐

2) 수행 절차와 체계

- 정책소관기관의 수요와 관계 기관간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문화영향평가 특성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여 평가유형 분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 평가유형 세분화가 지속될 수 있음
- 현재의 평가유형은 필요에 따라 개발되고 도입되었으며, 저마다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으나, 유형 복잡성으로 인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제기
 - 또한 평가유형별로 다른 평가방식과 수행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문화영향평가 수행체계 복잡성이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까지 지적되고 있음
- 평가가 완료된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소관기관에 반영결과 이행 및 반영 계획 제출을 요청하나, 제출 및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의무는 없는 상황으로 이에 평가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문화영향평가는 계획 단계중인 사업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 내용과 무관하게 다양한 여건에 의해 사업의 자체의 추진이 부진할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함
- 따라서 대상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문화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영향평가에 의한 직·간접적 변화와 효과를 측정해야 하나, 이는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방식 상으로는 강제 수행이 불가하며, 근거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함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고시(문화체육관광부 제 2017-29호)」에 의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기본법 시행령」상에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기능 역할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식적 역할 및 평가 업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3.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구성

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1) 조사개요

- 입법예고 되었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안 2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 1) 제·개정 법령, 2) 법정계획, 3)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4)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5)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6)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조사
- 위의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34명의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해, 조사한 평가 대상 유형의 중요도, 각 유형별로 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계획, 정책, 사업, 조사된 유형 외 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계획, 정책, 사업, 그리고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2) 대상 현황조사 결과

- 현황조사 및 전문가 서면조사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현황, 그리고 해당 대상을 「문화기본법」 상에서 규정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 대상 | 현황(2022년 9월 기준) | 대상 규정 근거 |
|-----------------------------|--|--|
| 제·개정 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2,738건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감안 | 한 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 법정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건(2023년 수립 예정)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감안 | 법률에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
|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15건 • 지방재정투자심사: 44건 • 중앙의뢰심사: 총 77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
|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23건 • 지방자치단체: 1,018건(도시개발사업 601건, 도시재생사업 417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도시개발사업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한 도시재생사업 |
| 문화·체육·관광 시설 건립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57건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 49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 |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 (문화도시 조성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도시: 67곳 • 기존에 심사를 위해 문화영향 평가를 실시한 계획: 79건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같은 법 제 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 |

주: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의 수는 현황조사 기준이 2021년임

나. 문화영향평가 수행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문화기본법」 상에 직접 명기할 경우,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대상을 사전에 예측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폐지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내포함
- 따라서, 기존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평가 대상에 법령·계획·사업 단위의 구체적 대상을 함께 명기하여 평가 범위는 확대하면서 필수 대상은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법상 명시한 필수 대상에 대한 평가는 의무화
 - 그 외 대상은 정책소관기관의 신청 및 협력체계의 협의에 의해 평가 가능하도록 평가대상 선정 체계 마련
- 문화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문화 개념의 특성상, 타 영향평가와 달리 문화관련 정책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 대상 법령, 계획,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대상 법령, 계획,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 문화영향평가는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기반하여 운영하며,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은 수요조사, 평가대상 후보 선정, 의견조회 및 대상 확정, 평가대상 통지의 4단계로 운영됨. 수요조사 단계에서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체크리스트 방식의 사전 검토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같은 수요 기반 평가 운영 방식은 규범적 평가라는 문화영향평가의 특성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향식 평가로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목적에도 정합하므로 유지가 필요함

- 또한 피 평가기관의 자체 수요 외에도 일반 국민, 전문가 대상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함

2) 평가수행 절차와 결과 환류

- 문화영향평가 수행 절차는 평가유형별로 세부 내용 차이가 있으나, 계획 단계, 사전준비 단계, 평가진행 단계, 결과 도출 및 환류 단계로 구분됨
-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은 추진계획과 평가유형별 평가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류체계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문화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상 환류체계를 조문에 직접 명시하여 의무화 하고자 하였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정책의 보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문화영향평가 수행 체계

1) 문화영향평가 수행 구조

- 현재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에 따라 볼 때, 문화영향평가의 전반적인 시행에 관한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였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가 요청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로 볼 수 있으며, 「문

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상에는 포괄적으로 평가수행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함

2) 평가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에 의거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담당함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는 지원기관의 기능, 역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신하여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권한,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준, 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함
 - 특히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이 아닌 평가지표, 평가방법 연구 및 개발, 평가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가 기관의 주요 업무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 역할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을 주장하였고, 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음

3.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방안

가. 「문화기본법」 개정 방향

1)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정책의 보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문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정책 및 계획과 함께, ‘법령을 제·개정할 때’를 명시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 |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삭제></p> |

- 문화영향평가의 운영계획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으로 포섭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 | <p>(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p> | <p>(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p>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p>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p>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모호하게 명시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현재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 밝힌 문화영향평가의 포괄적 대상(각종 계획, 정책) 중에서 필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강화하며,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요에 의한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가능하게 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p>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도시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④ 제2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체계를 법률로 규정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p>제9조의3(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법령 제·개정안, 계획 또는 사업(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서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대상 정책등에 반영한 결과(이하 "반영 결과"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p>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p>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정책등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서 및 반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원기관의 기능, 역할, 권한,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p>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연구기관 <p>② 평가전담기관의 업무,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방향

1)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문화기본법」상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조문의 앞으로 상향 이동하여 배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법률안의 위임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리함

2)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문화기본법」 개정안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시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 현행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규정은 법률상 근거를 갖도록 상향하여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법률안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2조 / 개정 제4조 | <p>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p> | <p>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사업 <p>②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p>③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건립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p>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p> <p>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p> | <p>문화시설</p> <p>2.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 및 같은 조 제17의2호 중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p> <p>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설치 건립 사업</p> <p>④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문화지구를 포함한다.</p>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3조 | <p>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p> <p>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p> <p>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삭 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역할과 지정기준을 규정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4조 / 개정 | <p>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p> | <p>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담기관의 운영</p>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 | <p>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p>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지표개발 등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업무 수행 경력을 갖춘 것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문화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함.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4조 / 개정 제6조 | <p>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p>제6조(문화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교육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문화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

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방향

1)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

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협력체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 기관 및 단체와 구축·운영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체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력체계를 통해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협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3조 / 개정 제2조 | <p>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9.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 <p>제2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3.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체계를 통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협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서와 반영 결과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문화영향평가 결과서와 반영 결과에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음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2조 / 개정 제3조 |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반영 결과에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라. 추진방안

1) 기대효과

- 「문화기본법」과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문화영향평가 근거법 개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구체성과 환류체계 마련 등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함
-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대상을 함께 적시함으로써, 필수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평가에 대

한 수요와 필요성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법에 조문으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문제시 되었던 평가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규범과 문화정책 대상을 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만큼, 문화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조문에 포함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더욱 구체화 하며, 평가전담기관의 역할과 지정기준을 설정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식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와 평가 필요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협의에 의한 방식을 유지하며, 문화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함

2) 후속과제

- 문화영향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수단으로써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상의 문화진흥계획 구도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정계획에 준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수립·운영되어야 함
 - 중장기 계획에는 계획 수립의 배경, 기본방향, 실행계획, 협력체계 및 교육 홍보, 정보화 및 인력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5개년 달성목표를 기준으로 수립·운영되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유형을 심의·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됨
 - 문화영향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설치·운영될 수 있음.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행정기관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법률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설치 고려

-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문화기본법」의 하위법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은 개별법으로서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절차, 방법, 환류,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정보화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목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1. 연구의 배경 | 3 |
| 2. 연구의 목적 | 5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
| 1. 연구의 범위 | 6 |
| 2. 연구의 방법 | 7 |
| | |
| 제2장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안 및 주요 이슈 | 9 |
| 제1절 추진 현황 및 제도 변화 | 11 |
| 1.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황 | 11 |
| 2. 「문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15 |
| 제2절 문화영향평가 관련 이슈 및 쟁점 | 19 |
| 1. 문화영향평가 대상 | 19 |
| 2. 수행 절차와 체계 | 22 |
| | |
| 제3장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구성 | 29 |
|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 31 |
| 1. 조사 개요 | 31 |
| 2. 대상 현황조사 결과 | 32 |
| 3. 전문가 서면조사 결과 | 48 |
| 4. 종합 결과 | 55 |
| 제2절 문화영향평가 수행절차 | 57 |
| 1. 평가대상의 선정 | 57 |
| 2. 평가수행 절차와 결과 환류 | 61 |

| | |
|-------------------------------------|-----------|
| 제3절 문화영향평가 수행 체계 | 63 |
| 1. 문화영향평가 수행 구조 | 63 |
| 2. 평가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 | 67 |
| 제4장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방안 | 71 |
| 제1절 「문화기본법」 개정 방향 | 73 |
| 1.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73 |
| 2. 「문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74 |
| 제2절 「문화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 81 |
| 1.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81 |
| 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86 |
| 제3절 추진 방안 | 89 |
| 1. 기대효과 및 개정 절차 | 89 |
| 2. 후속과제 | 91 |

참고문헌 / 95

ABSTRACT / 97

표 목차

| | |
|--|----|
| 〈표 1-1〉 최근 문화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 5 |
| 〈표 1-2〉 전문가 서면 자문 참여 명단 | 7 |
| 〈표 2-1〉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18년 입법예고 | 16 |
| 〈표 2-2〉 문화영향평가 관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입법 현황(21대 국회) | 17 |
| 〈표 2-3〉 문화영향평가 유형(현행) | 23 |
| 〈표 2-4〉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계획 및 개선 사항 | 25 |
| 〈표 3-1〉 2023년에 새롭게 세워야 할 5년 주기 법정 계획 대상 | 35 |
| 〈표 3-2〉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 중앙행정기관 단위 | 41 |
| 〈표 3-3〉 도시개발사업 현황(2021년): 17개 시, 도 기준 | 42 |
| 〈표 3-4〉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중요한 유형 | 48 |
| 〈표 3-5〉 유형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계획, 정책, 사업 | 49 |
| 〈표 3-6〉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현황 및 대상 규정 시 근거 | 55 |
| 〈표 3-7〉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구분(안) | 58 |
| 〈표 3-8〉 문화영향평가 평가과정 및 주요내용 | 61 |
| 〈표 3-9〉 평가 참여 주체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 구조 및 법령 현황 | 66 |
| 〈표 3-10〉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전담기관 지정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69 |
| 〈표 4-1〉 「문화기본법」 개정안 구성 체계 | 74 |
| 〈표 4-2〉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실시 | 75 |
| 〈표 4-3〉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운영 | 76 |
| 〈표 4-4〉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 78 |
| 〈표 4-5〉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79 |
| 〈표 4-6〉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 | 80 |
| 〈표 4-7〉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구성 체계 | 81 |
| 〈표 4-8〉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 83 |
| 〈표 4-9〉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 84 |
| 〈표 4-10〉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전담기관 지정 등 | 85 |
| 〈표 4-11〉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교육 등 | 86 |

| | |
|---|----|
| 〈표 4-1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성 체계 | 86 |
| 〈표 4-13〉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87 |
| 〈표 4-14〉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88 |
| 〈표 4-15〉 정부입법의 개정 절차 | 90 |
| 〈표 4-16〉 「성별영향평가법」 구성 체계 | 93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 8 |
| [그림 2-1]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변천사 | 11 |
| [그림 3-1]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일반 절차 | 60 |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가. 「문화기본법」 제 개정 및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현황

-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로 제정됨
- 「문화기본법」은 지금까지 총 6회(2016~2021년)에 걸쳐 개정되었음. 법률 개정의 주된 이유는 주로 법정 법인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근거 및 운영, 국민의 문화권 보장, 시행계획의 환류 방법, 장애인 문화접근성,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국민 문화생활 장려 등이었음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에 문화영향평가 수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나.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부족

- 현재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부터 결과 환류에 이르는 평가수행 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수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되었음
-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이거나 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되는 등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2018년 정부입법으로 한 차례, 2020년 12월 두 차례 발의되었으며(의안번호 6044,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2일 / 의안번호 6799,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21일), 이와 같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평가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이 요구되었음
- 따라서 향후 평가대상의 확대 및 다양화, 평가유형 및 평가절차의 정교한 설계 등을 통해 효율적, 체계적인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실시하고자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안할 필요가 큼

다. 문화영향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법 연구 미흡

- 최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문화영향평가 수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들(평가 매뉴얼 마련, 평가방법론, 평가지표, 평가대상 유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실제 법정평가 수행에 근간이 되는 관련법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
 - 다만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문화영향평가만을 위한 단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였으나, 실제 제·개정안에 담길 내용을 구성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함

〈표 1-1〉 최근 문화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 년도 | 연구제목 | 연구목적 |
|------|--|--|
| 2017 |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 •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동일한 지표, 개념, 측정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표준평가도구를 개발, 제시하여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 2018 |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 기존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를 개선, 체계화하고, 평가 원칙을 포함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안 |
| | 문화영향평가 관련 국외 동향 및 사례 연구 | • 문헌연구를 통해 국외 문화영향평가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2019 |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유형화 기준 연구 | • 평가대상 선정과 유형 적용을 위한 기준안 및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시행 및 활성화에도 기여 |
| 2020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 • 평가수행, 조직 관리, 법·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전 방안 제시 •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및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 필요성을 논함 |
| 2021 | 평가대상별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 평가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체계(지표 및 측정 방법) 개발 및 활용 방안 제안 |
| 2022 |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별 평가체계 구조화 연구 | •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체계 구조화 및 적합한 수행체계 도출 • 평가대상 특성에 따라 법령, 계획, 사업으로 유형화하여 대상별 평가유형을 단순화·유연화할 것을 제안함 |

- 그러므로, 문화영향평가 관련법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수행의 규칙들을 구성하고, 관련법에 담아야 할 대상 선정부터 평가 환류에 이르는 평가 전 주기의 내용들을 정하여, 사회 각 영역의 정책과 계획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 이후,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계획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법안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의 변화, 개정 이유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검토함
- 특히 2018년 입법예고되었던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2020년 12월 발의된 유정주 및 안민석 의원발의개정안에 주목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수행에 관련한 법령 개정 내용을 주요하게 살펴봄

나. 내용적 범위

- 「문화기본법」을 비롯해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문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분석함
- 문화영향평가 갖는 주요 이슈 및 쟁점과 관련 법령 연계 사안들을 고찰함
- 문화영향평가 대상 유형 및 수행절차, 평가체계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구성함
-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상의 필요 규정안을 제안함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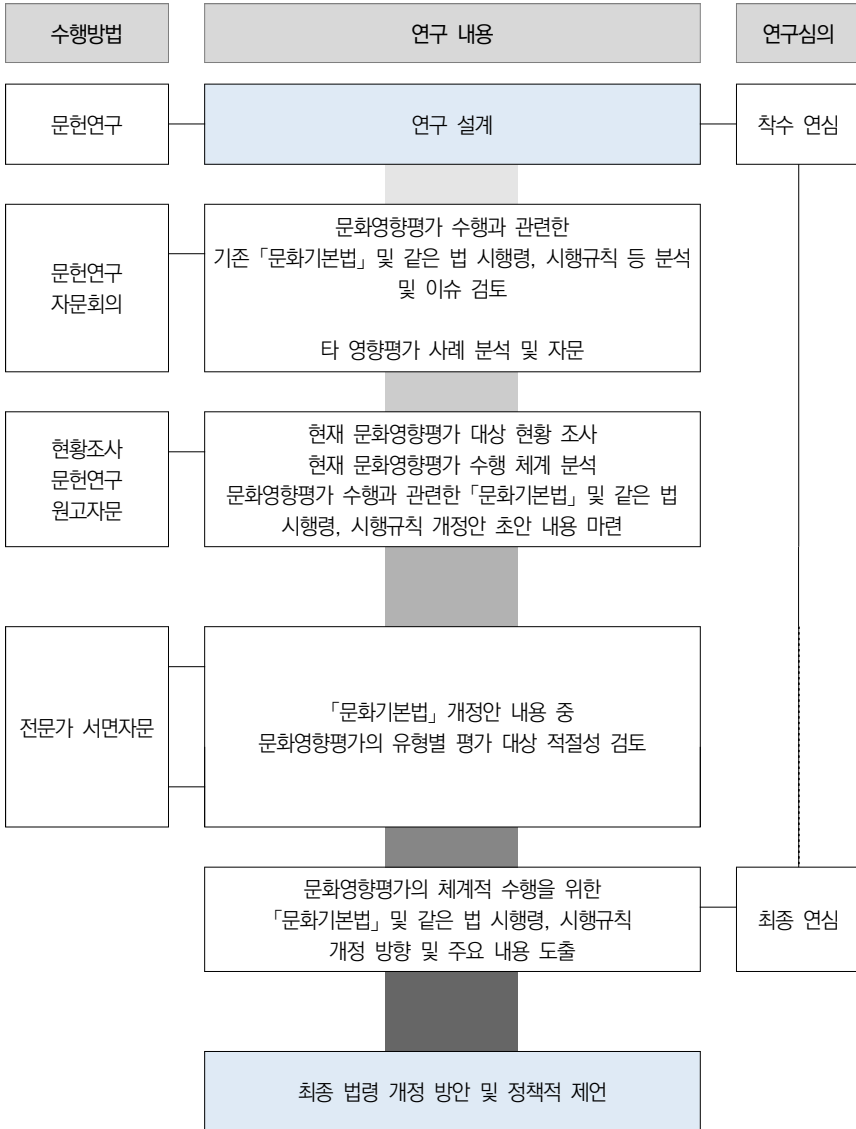
- 문헌조사
 - 단행본, 학술논문, 관련 법령 및 개정안 내용을 통한 현재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이슈 검토
 - 문화영향평가 및 유사 영향평가에 대해 평가대상 및 평가수행 체계와 관련한 법령 내용 비교 분석
 -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수행 체계의 현황 조사
- 법제 전문가 자문
 - 법제 전문가의 특별 원고자문을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작성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서면 자문
 - 문헌 및 현황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각 유형별 평가대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관련 전문가 서면 자문 실시
 - 서면 자문은 2022~2023 문화영향평가 전문가위원회 외에도 평가 참여, 관련 연구 참여, 대상 유형별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총 34명이 참여하였음

〈표 1-2〉 전문가 서면 자문 참여 명단

| 이름 | 소속 및 직위 | 이름 | 소속 및 직위 |
|-----|--------------------|-----|---------------------|
| 김성하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이성희 |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 김동영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신상화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
| 김상원 | 인하대학교 교수 | 배관표 | 충남대학교 교수 |
| 김영주 | 추계예술대학교 연구교수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모형오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팀장 | 김선형 |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
| 성보현 |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김준호 | (주)프로젝트이안 대표 |
| 송정은 | (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위촉연구원 | 류성효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
| 윤지영 |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민인철 |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이지현 | 문화가치평가연구소 대표 | 이병훈 | 창원대학교 교수 |
| 채경진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한상우 | 경남연구원 조사연구위원 |
| 김효정 |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 장석류 | 시애틀파트너스 이사 |
| 정기욱 | 도시공공환경연구원 대표 | 정선기 | 충남대학교 교수 |
| 정낙현 | 국립인동대학교 교수 | 길지혜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

| 이름 | 소속 및 직위 | 이름 | 소속 및 직위 |
|-----|----------------------|-----|----------------|
| 정종은 | 상지대학교 교수 | 장세길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 정수희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정정숙 |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 |
| 정창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부장 | 최정수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 조일형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2팀 팀장 | 한상헌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제2장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안 및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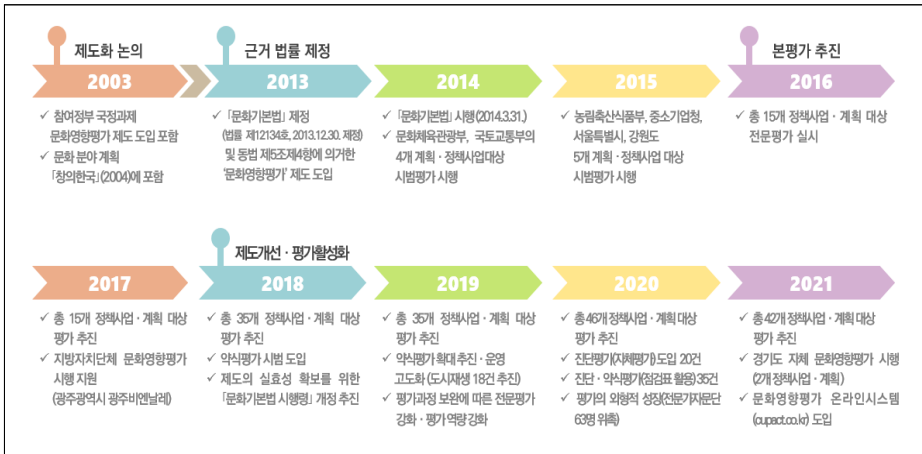
제1절 추진 현황 및 제도 변화¹⁾

1. 문화영향평가 제도 현황

가. 제도 도입 및 근거 법령

- 문화영향평가는 2003년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여 2013년에 근거법률인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 시범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평가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2021년까지 197건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118개 지역(광역시·도 포함 시·군·구)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중앙부처의 계획과 사업을 평가함

[그림 2-1]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변천사



1) 본 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김연진·연수현(2022).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별 평가체계 구조화 연구’의 내용 일부를 활용,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였음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제시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협력체계를 통하여 협의를 거친 경우에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여, 강제성 보다는 요청에 의한 평가수행 방식으로 운영함
 - 이에 따라 현재도 정책소관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평가진행 의사를 파악하여 진행되는 등 수요를 기반으로 한 평가수행 체계 유지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책소관기관의 공무원뿐 아니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와 평가수행 담당자에게도 필요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그 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관련 세부 규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견 청취),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와 위임행정규칙(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7호, 2017. 9. 4., 타법개정]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9. 4.>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4. 1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89호, 2016. 4. 1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제4조(협력체계 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회의수당 등 지급) 협력체계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행의 강제성 보다는 요청이나 협의에 의해 진행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그러나 평가대상 및 선정기준, 평가 유형, 추진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의 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옴

2. 「문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문화기본법」은 2013년 수정 가결 이후, 2016년에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년에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안), 2018년에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안), 2020년에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안), 2021년에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음
 - 2016년 개정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근거와 문화가있는날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 2017년 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관련하여, 법 제4조에 정치적 견해 관계없이 문화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2018년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문화진흥을 위해 매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적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 2020년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및 출연하도록 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함
 - 2021년 개정안은 문화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문화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여가 시설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진흥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정부는 2018년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20대 국회에서 2차례에 걸쳐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2018년 입법예고 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했고, 특정문화영향평가 실시, 결과 제출과 개선의견에 대한 권고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하였음
 -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계획과 정책으로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로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특정문화영향평가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한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선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의 환류를 규정함

〈표 2-1〉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18년 입법예고

| 정부입법 | 법령명 | 현황 | 추진현황 |
|---|------------------|---|------|
| 2018.08.20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2018.08.20.~10.1.) 법제처 심사 (2018.12.4.~) | 철회 |
|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화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p> <p>가.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안 제2조제1항)</p> <p>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계획을 · 지역문화진흥법 ·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가재정법 ·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 제37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열거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예시적으로 제시</p> <p>나. 특정문화영향평가 명시(안 제2조제3항)</p> <p>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의 혼동 가능성이 높아 후자를 특정문화영향평가로 명하여 명확성을 높이며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은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 협의를 거친다는 것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하여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p> <p>다. 결과제출 및 개선 의견 권고 규정 신설(안 제2조의2)</p> <p>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한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p> | | | |

자료: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

- 제 21대 국회에서 문화영향평가 관련 의원입법이 2차례 시도되었는데,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던 의안을 동일 내용으로 다시 상정하였고, 유정주의원은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직접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상정하였음
- 안민석의원안과 유정주의원안이 동시에 법안 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정주의원안을 중심으로 통합 수정안을 작성하여,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388회 국회(임시회)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2021.06.23.)에 상정하였으며, 현재 계류 중에 있음

〈표 2-2〉 문화영향평가 관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현황(21대 국회)

| 의안입법 | 의안명 | 현황 | 의결결과 |
|---|-------------------------|------------------------|------|
| 2106799 (2020.12.21.) |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11인) | 위원회 법안소위 2021-02-24 | 계류의안 |
|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201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p> <p>그런데,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아니라 선연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침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삭제 및 제9조의2 신설).</p> | | | |
| 의안입법 | 의안명 | 현황 | 의결결과 |
| 2106044 (2020.12.2.) |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등13인) | 위원회 법안소위 2021-02-24 | 계류의안 |
|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그런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p> <p>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p> | | | |

자료: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의안정보시스템(ikms.assembly.go.kr)

- 유정주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기본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서 및 반영 결과 제출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으로 열거하여 명시하였으며, 평가를 의무화 함
 - 실시 예외에 대해서도, 대상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대상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함
 - 또한 결과 환류절차를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 장 및 지자체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와 반영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 반영 결과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평가수행기관 및 평가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어,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 조사·연구, 문화영향평가 관련한 교육·훈련,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함. 또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문화영향평가 관련 이슈 및 쟁점

1. 문화영향평가 대상

가. 평가대상의 모호성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고 하여 문화영향평가 수행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제시하였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나 협력체계를 통하여 협의를 거친 경우에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 이처럼 정책소관기관 수요에 기반하여 평가가 시행되므로, 평가대상 모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제 21대 국회에 상정된 유정주의원안과 안민석의원안 모두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평가임에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방식을 지적하였음
- 평가대상이 모호하다 보니, 연간 이루어질 평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평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특정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됨
 - 이에 따라 2018년 입법예고 되었던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제안하였음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요 체계

1. 대상 선정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0조의2에 의거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과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임
- 평가대상의 발굴 및 확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과제발굴 공모, 전문가 및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등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평가대상이 선정됨

2. 평가 주체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3. 결과 통보 및 환류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함

4. 평가 현황

- 최근 2019~2021년까지 진행된 특정성별영향평가 건수는 다음과 같음

| 년도 | 여성가족부 실시 | 지방자치단체 실시 |
|------|----------|-----------|
| 2019 | 10건 | 15건 |
| 2020 | 12건 | 11건 |
| 2021 | 8건 | 15건 |

- 2018~2020년까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권고에 대해 이행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개, %)

| 특정평가 수행연도 | 개선권고 과제 수(A) | 2019년 완료 | 2020년 완료 | 2021년 완료 | 완료합계(B) | 이행중(기타) ¹⁾ (C=A-B) |
|-----------|--------------|----------|----------|----------|----------|----------------------------------|
| 2018 | 73 | 22 | 18 | 3 | 43(58.9) | 30(불수용 14) |
| 2019 | 81 | - | 39 | 18 | 57(70.4) | 24(불수용 11) |
| 2020 | 104 | - | - | 37 | 37(35.6) | 67 |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43

나. 평가대상 확대 및 다변화 경향

-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행정 근거로서 모든 국가 활동의 근간이 되므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화영향평가 목적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문화영향평가 영향 범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토와 국민 차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
 - 2018년 발의되었던 유정주, 안민석 의원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였음
 - 같은 의도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등에서 법령을 대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1년부터 본평가를 시작한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도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사례와 같이, 제·개정 법령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법령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이에, 2022년 자체평가(진단평가)의 형태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대상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본평가가 시작되었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새로운 유형의 평가대상 사업이 추가되어 왔음
 - 2016년에는 계획, 도시 및 마을재생사업, 문화재복원활용사업, 시설건립사업 등 5개 유형으로 문화영향평가가 수행되었으나, 2017년에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문화도시 사업, 대규모 국제행사가 추가되었고, 2018년에는 대규모 건설사업, 2019년에는 디자인 사업, 2020년 환경조성사업, 2021년에는 도시개발사업까지 수행되는 등 매년 신규 평가대상이 추가됨
- 그러나 각 연도별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사업 종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평가대상과 평가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특정 연도에 한 두 개의 사업에 집중되어 평가가 이루어졌음

- 2018년에는 도시재생사업 평가 진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점차 진행 건 수가 줄어들었고, 2020년에 이르러 문화도시/특화사업의 평가 진행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음
- 이는 도시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던 2018년에 관련 사업이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사업이 본격화되었던 2020년부터는 문화도시/특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아진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부가 주력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핵심 정책 사업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구도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사업 단위로 법에 규정하는 것이 향후 법의 잦은 개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수행 절차와 체계

가. 평가유형의 세분화와 수행체계의 복잡성

-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에 시범평가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는 동안 단일형식이었던 평가유형이 평가 심도에 따라 6가지로 분화됨
- 제도 시행의 초기에는 전문평가기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문화적 환경요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심층 분석하는 종합적(정량·정성적) 평가 방식인 심층평가로 이루어졌음
- 대상 사업별 특성과 진행 정도에 따라 평가 심도 차별화가 요구됨에 따라, 기본평가와 전략평가 유형이 2017년, 2018년에 각각 개발·운영됨
 - 기본평가는 하나 혹은 몇 가지 문화적 환경요소의 잠재적 영향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예측해보는 정성적 평가방식임
 - 전략평가는 심층평가와 같은 방식이나 평가방법론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시행되며, 주로 문화영향평가의 신규 평가 대상 발굴시 활용됨

〈표 2-3〉 문화영향평가 유형(현행)

| 평가유형 | 평가내용 | 평가기간 | 평가 수행 방법 | 평가자 | |
|-------|-------------|--|----------|---|---|
| 자체 평가 | 진단 평가 | 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 ~1개월 | 정책담당자가 진단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 의견 송부→반영계획 제출 | 정책 소관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전문가 검토(2인) |
| | 약식 평가 |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 검토·평가 | 1~2개월 | 정책담당자가 약식평가서 작성·제출→외부전문가의 평가결과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 정책 소관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 전문가 평가위원(4인) |
| 전문 평가 | 기본 (단계별) 평가 | 기본평가와 동일하며, 자체평가 이후 전문평가에 대한 수요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 | 3~4개월 | 외부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 전문 평가수행기관 |
| | 기본 평가 | 일반·단일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 평가 | 4~6개월 | 외부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 전문 평가수행기관 |
| | 심층 평가 | 다년도 종합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 6~7개월 | 외부 평가기관을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및 주민 설문조사→반영계획 제출 | 전문 평가수행기관 |
| | 전략 평가 | 심층평가와 같으나, 새로운 유형의 사업 등, 평가방법론의 자율성을 강조하여야 할 때 시행 | 6~7개월 | 외부 평가기관을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및 주민 설문조사→반영계획 제출 | 전문 평가수행기관 |

- 정책 및 계획이 본격적 수립되거나 시행되기 전 단계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담당자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가 더욱 강조되면서, 정책소관기관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체평가(약식평가) 유형이 201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됨

- 2020년부터는 이를 간소화하여 평가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초기의 기획 단계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문화적 영향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진단평가 유형을 개발하여 시행함

- 자체평가 시행 이후 전문평가로의 재평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기본(단계별)평가 유형도 신설되어 운영됨
 - 기본(단계별) 평가는 자체평가를 완료한 대상 중 전문평가에 대한 수요와 더욱 심도 있는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기본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지표 중 필요 부분을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음
- 이처럼, 정책소관기관 수요와 관계 기관간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문화영향평가 특성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여 평가유형이 분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요를 반영하여 평가유형 세분화가 지속될 수 있음
- 현재 평가유형은 필요에 기반하여 개발·도입되었으며 저마다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으나, 유형 복잡성으로 인해 이해도와 접근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문화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평가유형 분화가 문화적 가치 사회적 확산이라는 문화영향평가 목적에 전치된다는 모순 야기
- 한편, 문화영향평가의 수행단계는 사전준비단계(수요조사), 평가 진행 단계, 결과 도출 및 환류 단계로 구분됨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유형이 결정되면, 자체평가는 정책소관기관이 스스로 평가한 후 전문가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문평가의 경우 제3의 전문평가기관이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문평가는 스코핑 과정을 통해 각 사업에 적합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활용하여 사업별 특이성을 반영함
 - 자체평가는 사업별 특이성 반영 보다 모든 대상 사업에 대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함
- 이같이 평가유형별로 다른 평가방식과 수행 체계를 활용하고 있어서, 문화영향평가 수행 체계의 복잡성으로 제도 확산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나타남
 - 평가지표의 경직성으로 인한 사업별 특이성 반영상의 한계도 존재하므로, 같은 유형의 평가에서도 대상에 따라 지표 적용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식도 요구됨

나. 결과 환류 체계화 필요성

- 평가가 완료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소관기관에 반영결과의 이행 및 반영 계획 제출을 요청하나, 이는 의무가 아닌 상황이므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정책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완료, 추후 개선, 기타 내용에 대해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평가에 대해 동일 형식을 적용함

〈표 2-4〉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 계획 및 개선 사항

| 구분 | 기재 사항 |
|-------|--|
| 반영 완료 | 도출된 개선·보완사항 중 해당 사업(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거나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 |
| 추후 개선 | 도출된 개선·보완사항 중 현 시점까지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후에 해당 사업(또는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인 사항을 기재 |
| 기타 | 도출된 개선·보완사항과 정책 제언 중 문화영향평가 결과나 검토의견 중 해당 사업(또는 사업계획)과 관련 없거나,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 |

- 특히 문화영향평가는 계획 단계의 초기 사업도 대상으로 하므로, 계획과 무관하게 다양한 여건에 의해 사업 자체 추진이 부진할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대상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문화영향평가 결과 반영과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문화영향평가에 따른 직·간접적 변화와 효과를 측정해야 하나, 이는 수요 바탕으로 한 현행 방식으로는 강제 수행이 불가하며, 근본적 개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이미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단계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로 평가결과 환류와는 무관함
 - 2022년 문화영향평가 사업에서 약식평가 유형으로, 전문기평가단을 활용한 사후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회성의 평가라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

다. 평가전담기관의 필요성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제 2017-29호)」에 의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상에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로 인해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식 역할 및 평가 지원 업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 나타남
-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타 분야 영향평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평가를 전담하거나 혹은 부처를 대신하는 대행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 업무 등을 정하고 있음
- 예로,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평가 및 운영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정하였음
 -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호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하고, 효율적 평가 추진을 위해 대상, 기준, 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수립 권한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권한,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의 통보, 평가자문기구 구성 및 자문 의뢰 권한, 평가 역량 관리 등을 위한 업무와 기능을 정하고 있음
 - 위 내용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
-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평가기관’ 및 해당 기관의 업무를 규정함. 현재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

-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근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대표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업무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명시함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는 평가기관을 중앙성별영향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1)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2)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4)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 지원, 5)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6)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원, 7)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8)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컨설팅 운영, 9) 기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2)
-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신해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대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고용영향평가는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와 달리, 평가 및 운영 기관들의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 관련법 상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음
 -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 대행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전담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수행업무들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적시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시행 중이거나 시행 완료된 정책 중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을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제5항, 제6항에서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필요시 해당 기관에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다고 함
- 이에 비춰볼 때,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시된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의해 대행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고용정책 기본법」 상의 장관의 업무가 곧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업무 근거로 볼 수 있음
- 이상의 사례들은 각 영향평가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들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관의 대표적인 기능, 역할, 업무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평가전담기관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 그러나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평가 지원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권한, 범위 등이 관련 법령이나 지침 상에 공식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이 때문에, 평가 지원기관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불명확하며, 이해관계자(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평가위원 등) 및 평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거나,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나타남
- 그러므로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로 이양 받은 전문 기관의 공식적인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 수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제3장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구성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1. 조사 개요

가. 대상 분류

- 본 조사는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중 평가대상의 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관련 문헌들을 바탕으로 주요 대상을 정리하고 예상되는 대상 선정 기준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구체적인 평가대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 구체적인 평가대상을 제시했던 관련 개정안들을 조사하여 주로 언급하고 있는 대상들을 분류하였음
 - 관련 법령들은 2018년 8월 20일 입법예고 되었던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년 12월 유정주,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로 각 두 차례에 걸쳐 제안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임
- 대상들을 분류하는 과정은 그간의 개정안들에서 제시한 문화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중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외 언급된 대상들에 대해 기타로 분류하거나 별도의 분류 필요성을 판단하였음
- 분류 결과,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보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1) 제·개정 법령, 2) 법정계획, 3)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4)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5)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6)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임

나. 조사 방법

- 먼저 분류된 대상들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 1건, 의원발의안 2건에서 명시한 대상 선정 기준의 내용들을 분석, 종합함

- 종합한 대상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계획, 정책, 사업 현황을 대상별로 조사함
 - 대상 현황은 2022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해당 계획, 정책,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 보고서, 관련 기관 홈페이지, 2022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자료 등을 토대로 현황을 조사함
 -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업 현황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2개의 특별자치시, 도의 총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악하였음
 -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공개된 최근 현황이 2021년이므로 부득이하게 2021년 기준으로 대상 현황을 조사하였음

2. 대상 현황조사 결과

가. 제·개정 법령

1) 대상 기준

① 기존 제안된 개정안 내용

- 시행령 개정안 1건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의원발의안 개정안 2건에는 아래 내용이 제안되어 있음
 -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제1항제1호에는 평가 실시 대상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을 명시함
 -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 2(문화영향평가) 제1항제6호에는 평가 실시 대상 중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중인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관련된 사업’을 명시함

② 종합한 대상 기준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제·개정 법령은 “한 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등의 법령으로 볼 수 있음

2) 대상 현황

- 2022년을 1월 1일부터 9월 26일 기준으로 정부입법지원센터²⁾에 게시된 제·개정 추진 정부입법 법령은 총 1,734건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자치법규정보시스템³⁾ 상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제·개정이 이루어진 법령의 수를 파악하였음
 - 조례의 경우 총 16,296건이 해당 기간 동안 제·개정되었음
 - 규칙의 경우 총 4,708건이 해당 기간 동안 제·개정되었음
- 위 자료를 합산해 볼 때, 2022년 9월 현재 기준으로 한 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은 약 22,738건이며,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모든 분야의 제·개정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타 분야 영향평가의 경우, 제·개정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할 때, 평가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따라 수용하는 대상의 규모가 다름
 -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21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관 1,984건, 광역자치단체 소관 1,969건, 기초자치단체 소관 18,359건, 시·도 교육청 소관 574건, 총 22,88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음(여성가족부, 2022)
 -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제·개정 법령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6월을 기준으로 부패영향평가 대상인 제·개정 법령은 총 699개임⁴⁾
 - 부패영향평가의 제·개정 법령 대상 수가 적은 이유는, 기관이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관 법령의 경우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

2)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현황,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OfiOrgCd=&stDtFmt=2022.+1.+1.&edDtFmt=2022.+9.+26.&lbPrcStsCd=&lsNmKo=&pageSize=100> (검색일: 2022.9.26.)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체 자치법규, <https://www.elis.go.kr/allAlr/allAlrList> (검색일: 2022.9.26.)

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자료실, 부패영향평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70000&bid=120&act=view&list_no=40183 (검색일: 2022.9.26.)

향평가를 요청하기 때문에, 모든 제·개정 법령이 대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22). 예로 부패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제·개정 법령의 수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792건임⁵⁾

-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제·개정 법령 가운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추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나. 법정 계획

1) 대상 기준

① 기존 제안된 개정안 내용

- 시행령 개정안 1건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의원발의안 2건에는 아래 내용이 제안되어 있음
 -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제1항제2호에는 평가 실시 대상 중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을 명시함
 -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 2(문화영향평가)제1항제5호에는 평가 실시 대상 중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명시함

② 종합한 대상 기준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법정 계획은 “법률에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음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자료실, 부패영향평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70000&bid=120&act=view&list_no=41903 (검색일: 2022.9.26.)

2) 대상 현황

-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3년에 5년 이상 주기의 법정 종합 및 기본계획 대상은 총 86건으로 조사되었음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은 중기 5년, 장기 10년 주기로 계획을 작성하며, 그 외 모든 분야의 법정 계획은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음

〈표 3-1〉 2023년에 새롭게 세워야 할 5년 주기 법정 계획 대상

| 주무부처 | 계획구분 | 수 | 주무부처 | 계획구분 | 수 |
|-----------|------|------|---------|-------|------|
|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 9 | 여성가족부 | 기본계획 | 4 |
| | 종합계획 | 6 |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계획 | 5 |
| | | | 통일부 | 기본계획 | 1 |
| 고용노동부 | 기본계획 | 5 | 해양수산부 | 기본계획 | 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본계획 | 5 | | 종합계획 | 3 |
| | 교육부 | 종합계획 | 1 | 행정안전부 | 기본계획 |
| 기본계획 | | 4 | 종합계획 | | 1 |
| 종합계획 | | 2 | 환경부 | 기본계획 | 3 |
| 국방부 | 기본계획 | 1 | 해양경찰청 | 기본계획 | 1 |
| 국토교통부 | 기본계획 | 5 | | 경찰청 | 기본계획 |
| | | | 종합계획 | 1 | |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 | 2 | 농촌진흥청 | 기본계획 | 1 |
| | 종합계획 | 2 | 문화재청 | 기본계획 | 1 |
| 법무부 | 기본계획 | 1 | 산림청 | 기본계획 | 2 |
| | | | | 종합계획 | 2 |
|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 4 | 국무조정실 | 기본계획 | 1 |
| | | | 인사혁신처 | 기본계획 | 1 |
| | 종합계획 | 2 | 총 | | 86 |

- 추가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개정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정 계획 또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추후 평가 대상에 적합한 법정 계획을 검토, 선택할 수 있음
 - 참고로 2020년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했던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평가위

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문화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 가운데 〈관광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경관관리계획〉,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국토교통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어발전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김면·이경진·김윤경, 2020)

다.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1) 대상 기준

① 기존 제안된 개정안 내용

- 시행령 개정안 1건, 의원발의안 2건에는 아래 내용이 제안되어 있음
 - 2018년 입법예고 되었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1항 중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했음
 - 위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음. 다만 해당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만 명시되어 있음
 -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제1항제3호에는 시행령 개정안 및 안민석의원안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정주의원안의 내용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종합한 대상 기준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은 보다 세부적인 근거를 제안한 정부발의의 시행령 개정안 및 안민석의원안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대상 기준의 예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볼 수 있음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대상 기준의 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 중앙의뢰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 가. 시·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삭제 <2014.11.28>
-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대상 현황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 먼저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제6장 제36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홈페이지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현황을 살펴봄
- 2022년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총 5건임. 타당성재조사 사업은 총 8건임⁶⁾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그 수가 명확하지 않으나 총 2건이 공개 진행되고 있음⁷⁾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내 조사 대상 현황을 살펴봄
 - 현재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및 심사 현황을 살펴볼 수 없었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봄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실시한 투자심사 대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총 33건이 수행되고 있음.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교통, 도시개발, 환경, 교육, 공원조성 등이 있음⁸⁾

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s://pimac.kdi.re.kr/study/fina_list.jsp?pp=10&bizNm=&year=2022&exmnType=01&exmnStep= (접속일: 2022. 9. 26.)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https://www.kjpf.re.kr/bbs/gmac_board_Notice.do (접속일 2022. 9. 26.)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https://limac.krila.re.kr/news/notice> (접속일: 2022.9.26.)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실시한 투자심사 대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총 11건이 수행되고 있음. 분야는 산업단지 조성 혹은 청사 건립 및 이전사업임)
- ③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중앙의뢰심사
- 추가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을 17개 시, 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2년 예산 자료 및 2022년 1, 2, 3차 중앙의뢰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총 77개의 사업이 나왔음. 대부분의 사업은 교통, 도로건설, 공원 및 공공여가시설 건립, 문화시설, 청사 건립 및 이전, 분야별 혁신센터 및 파크 조성, 시설현대화, 정보통신기술 구축사업 등 매우 다양함
 - 조사된 사업 현황 가운데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이와 같이 중앙의뢰심사 대상과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들 간의 중복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 사업은 2022년 기준 약 59건 정도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중앙의뢰심사 대상 사업 76(중복 1건 제외)건을 추가했을 경우 약 135건 정도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 이 중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검토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

라.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

1) 대상 기준

① 기존 제안된 개정안 내용

- 시행령 개정안 1건, 의안발의안 2건에는 아래 내용이 제안되어 있음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https://lmac.lofa.or.kr/subList/20000003436> (접속일: 2022.9.26.)

- 2018년 입법예고 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조제1항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을 규정함
- 여기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함.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 2(문화영향평가)제1항제1호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 다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제1항제4호에는 ‘도시의 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이 도시개발 및 재생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위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② 종합한 대상 기준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대상 현황

① 중앙행정기관

-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도시개발 또는 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처는 대표적으로 7개 부처가 있음
 - 대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있음
- 총 23건의 사업들은 노후된 지역이나 마을들을 개선하는 사업의 성격을 대부분 띄고 있으며, 그 외 지역개발, 혁신파크 및 클러스터, 스마트시티 조성 등이 있음 (<표 3-2 참고>)

<표 3-2>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 중앙행정기관 단위

| 주관부처 | 사업명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개발사업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 국토교통부 | 새뜰마을사업 |
|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 | 지역개발사업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 | 공공주택건설사업 |
| | 빈집정비사업 |
| | 터새로이사업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
|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

| 주관부처 | 사업명 |
|-----------|-----------------------|
| 행정안전부 | 특수상항지역 개발 사업 |
| |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 |
| 국방부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 | 어촌뉴딜300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가장 최근으로 검색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17개 시, 도에서 시행 완료 혹은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총 601개임¹⁰⁾
 - 이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및 수용, 환지, 혼용 방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사업의 수가 많은 곳은 경기 194건, 충남 72건, 경남 70건 정도이며,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사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남

〈표 3-3〉 도시개발사업 현황(2021년): 17개 시, 도 기준

| 지역 | 개소 | 면적(㎡) |
|--------|-----|----------|
| 서울 | 11 | 9,886.1 |
| 인천 | 29 | 10,546.6 |
| 경기 | 194 | 58,178.1 |
| 수도권 소계 | 234 | 78,610.8 |
| 부산 | 10 | 1,555. |
| 대구 | 14 | 866.9 |
| 대전 | 20 | 5,816.3 |
| 광주 | 16 | 2,510.4 |
| 울산 | 18 | 7,519.6 |
| 강원 | 20 | 2,313.7 |
| 충북 | 22 | 4,758.1 |
| 충남 | 72 | 20,531.9 |
| 전북 | 14 | 9,268.6 |

10) 국토교통 통계누리, 도시개발사업현황,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lid=16&hFormId=5648&hDivEng=&month_yn=\(검색일: 2022.11.03.\)](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lid=16&hFormId=5648&hDivEng=&month_yn=(검색일: 2022.11.03.))

| 지역 | 개소 | 면적(㎡) |
|---------|-----|-----------|
| 전남 | 25 | 10,241.2 |
| 경북 | 57 | 14,452.8 |
| 경남 | 70 | 20,986.5 |
| 제주 | 7 | 7,063.9 |
| 세종 | 2 | 544.6 |
| 비수도권 소계 | 367 | 108,429.5 |
| 합계 | 601 | 187,040.3 |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lId=16&hFormId=5648&hDivEng=&month_yn=\(검색일: 2022.11.03.\)](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lId=16&hFormId=5648&hDivEng=&month_yn=(검색일: 2022.11.03.))

- 2022년 기준 17개 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총 417건이 조사되었음
 - 사업의 종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괄사업(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활성화사업((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특별재생지역), 그리고 혁신지구가 있음
 - 인정사업은 총 87건, 총괄사업 35건, 활성화사업 286건, 혁신지구 9건으로 조사됨

마.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1) 대상 기준

① 기존 제안된 개정안 내용

- 통상적으로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다음의 시설들을 지칭하고 있음
 -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상연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도서시설: 도서관, 작은도서관
 -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경기(관람)장
 -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 관광시설: 테마공원, 관광단지 내 공공시설
 - 종합(복합)시설

- 시행령개정안 1건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의원발의안 2건에는 아래 내용이 제안되어 있음
 -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의 대상)제1항제5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당 시설을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제9조의 2(문화영향평가)제1항제4호에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제 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가운데에는 평가 실시 대상 중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명시함
 -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 중앙의뢰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중 ‘다.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에 포함시켜볼 수 있음

② 종합한 대상 기준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은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음

2) 대상 현황

-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 위 세 개의 법률에 공통적으로 지칭되는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활동, 문화 보

급·전수, 관광, 종합(복합)시설 건립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 지정 결과를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총 57건의 관련 시설 건립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 것은 전통문화 관련 시설 건립, 체육시설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아트센터 수준의 대단위 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②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
- 17개 시, 도 2022년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은 총 49건으로 나타남
 - 사업의 종류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건립, 공원 및 생태정원 조성, 관광 시설 건립을 포함하고 있는 관광개발 및 조성사업 등이 있음

바.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

- 여기에서는 앞의 다섯 가지의 평가 대상 유형에 속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안된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가운데 언급되었거나, 과거 문화영향 평가를 꾸준히 수행해왔던 계획, 정책, 사업들을 정리하였음

1) 문화도시 조성계획

① 기존 제안된 개정안 내용

- 시행령 개정안 1건, 의원발의안 1건에는 아래 내용이 제안되어 있음
 - 정부가 발의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조제1항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시함
 -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 2(문화영향평가)제1항제3호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평가 실시 대상 중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사업'을 명시함

② 종합한 대상 기준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으로 볼 수 있음

③ 대상 현황

- 현재까지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67곳임
 - 2021년 1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18곳이며, 2022년 9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예비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49곳임¹¹⁾
 -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적시되어 있진 않으나, 지침상 문화영향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음
 -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총 79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수행되었음
 - 향후 ‘문화도시 2.0’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제 시행 단계로 가게 된다면,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문화영향평가의 수요가 다시 생기게 될 것임

2) 문화재 관련 사업

- 문화재 관련 사업은 대표적으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으로, 주로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 보존 사업을 들 수 있음
- 현재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행령 개정안 및 의원발의안에서는 문화재 관련 사업을 구체적인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다만 기존 문화영향평가 실시 대상 중에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가장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있음. 시범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총 7곳(전북 군산,

11)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수 67곳은 예비도시로 선정된 이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음

- 전북 익산, 전남 목포, 경북 영주, 경북 영덕, 충남 서천, 경남 통영)임. 이 중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을 얻고자 문화영향평가를 받았던 지방자치단체는 총 11곳임
- 그 외에도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도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였음
 - 하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향후 사업 존재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별도의 문화재영향평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음. 그래서 현재 문화재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 예측이 힘들며, 해당 유형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재고되어야 할 상황임

3) 기타

- 그 외에도 과거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들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제안했던 것들 중 국정과제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등이 있음
 - 국정과제의 경우, 2022년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2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국정과제 대상 사업에 대한 공식 자료를 전 부처별로 파악하기 힘들며, 매년 그 개수가 달라질 것이 예상되기에 현재 시점에서 국정과제 현황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음
 - 또한 국정과제 가운데 문화 분야 국정과제 외에도 타 분야 과제 중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해볼만한 사업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2022년 현재 폐지된 사업으로 조사됨
 - 그 외에도 과거 「문화기본법」 개정법률안들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거나, 혹은 장관이 평가를 요청하거나, 혹은 직권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 및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

3. 전문가 서면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 앞에서 서술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기본법」 개정 시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보다 정밀하고 적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총 34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서면질의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검토 받음
- 질의한 내용은 크게 4개로 구분됨
 -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된 7개(기타에 해당하는 국정과제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제외함)의 대상 유형의 중요도
 - 각 유형별로 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계획, 정책, 사업
 - 7개 유형 외 평가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계획, 정책, 사업
 -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의 적절성

나. 조사 결과

1)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유형별 중요도

-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된 7개의 평가 대상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법령에 지정될 것을 가정할 때,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유형에 대해 답변한 결과는 <표 3-4>와 같음
 - 중요도는 1의 경우 '가장 중요함' ~ 7의 경우 '가장 덜 중요함'으로 표시하게 하였음. 그러므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들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덜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4>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중요한 유형

| 대상 | 제 개정 법령 | 법정 계획 | 대규모예산투입사업 | 도시개발·재생사업 |
|-----|--------------------|-------------------|-------------------|-----------|
| 중요도 | 4.72 | 3.33 | 3.06 | 2.45 |
| 대상 | 문화·체육·관광 시설건립사업 | 기타 (문화도시 조성계획) | 기타 (문화재 관련 사업) | |
| 중요도 | 3.90 | 4.09 | 5.15 | |

주: a) 1 '가장 중요함' ~ 7 '가장 덜 중요함'으로 판단. 점수가 높을수록 덜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b) 33명(전문가 1명 점수 기입 누락)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낸 숫자를 중요도에 기입함,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 전문가들의 판단 결과를 볼 때,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대상 유형은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되는 유형은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나타남
- 문화재 관련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으로서의 중요도도 낮을뿐더러,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별도의 문화재영향평가의 실시 가능성, 문화영향평가를 주로 수행해왔던 문화재 관련 사업들의 지속 불투명 등으로 인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해당 유형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클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유형문화재의 경우도 유형별로 그 종류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계획, 정책, 사업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음

2) 각 유형별로 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계획, 정책, 사업

-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각 유형별로 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계획, 정책,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였음. 그 중 다수로 중복된 제안을 한 계획, 정책, 사업을 유형별로 정리한 표는 <표 3-5>와 같음

<표 3-5> 유형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 혹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계획, 정책, 사업

| 유형 | 대상(안) | 추가대상 | 제외대상 |
|---------|---|--|---|
| 제·개정 법령 | 한 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의견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현실적인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령을 선별하는 과정 필수 • (지자체) 특수한 조례, 규칙으로 제한 필요, 혹은 규칙 수준은 제외 |
| 법정 계획 | 법률에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종합, 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광역 지자체가 연계된 종합기본계획 • 인구 관련 계획, 외교부 주요 정책, 중기부(소상공인 지원, 벤처창업, 온라인 플랫폼 상생 관련)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계획 • 타 부처의 경우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신지부, 환경부 소속 계획들 • 일부 국토교통부 소속 계획(예: 골재수급 기본계획) • 일부 행안부 사업 관련 계획(예: 안전교육 기본계획) |

| 유형 | 대상(안) | 추가대상 | 제외대상 |
|-------------------|---|--|--|
| 대규모에 산 투입 사업 |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 | • 큰 의견 없음 | • 문화, 관광분야 사업 • 국토부가 실시하는 교통 분야 (도로, 철도 및 지하철 개설 등) 사업, 항만, 가스배관, 정비, 환경, 청사 건립 사업 |
| 도시 개발 또는 재생 사업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한 도시재생사업 | • 큰 의견 없음 | •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된 도시재생 사업 • 주거지 지원형 사업 • 경제7번형 도시재생 사업 • 마을 단위 소규모 사업 • 생태 관련 도시 정비 사업 • |
| 문화 체육 관광 시설 건립 사업 |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체육 시설 신축 건립 사업 | • 민간투자(BTL, BTO)에 의한 문화관광시설 조성 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도 의뢰 심사 사업 | • 향유, 창작 등 문화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시설(예: 단순 체육시설, 전통문화체험시설자원 같은 보수사업) • 단순 시설 개, 보수 사업 |
| 기타 필요성이 인정 되는 정책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 • 예비도시 선정 신청 계획 | • 큰 의견 없음 |
| | 「문화재보호법」 제50조 및 제70조에 의거해 국가등록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등록 지정을 신청하는 문화재 중 동법 제2조제1항에 의거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 및 민속문화재 등과 관련한 계획 및 사업 | • 발굴 및 복원과 관련한 계획, 사업 | • 소방방재시설 점검, 유지관리 사업 |

3) 7개 유형 외 평가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계획, 정책, 사업

- 7개 유형 외 평가대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계획, 정책,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였음.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답변한 대상은 크게 국정과제 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사업, 지역 단위로 진행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있음
- 국정과제 관련 사업은 이미 의원발의안에서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음. 전문가들은 국정과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권위 등을 고려할 때, 국정과제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자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함
 - 다만 국정과제 또한 그 수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하는 논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되어야 할 계획, 정책, 사업: 국정과제 관련 사업

- 국정과제 중에서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근거로 문화적 영향의 범위나 크기가 크게 예상되는 사업들은 매년 협의체와 같은 전문기구에서 논의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 국정과제의 수립 과정과 수립 주체는 불투명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법령 이상의 권위를 갖고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를 제안, 확정하는 데 참여하는 인사들의 분포 중에 문화계 전문가들이 소수인 것이 현실이므로,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문화적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정과제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관점을 견지하게 된다면,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사전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고, 문화계 전문가들도 참여가 가능한 부대효과가 발생할 것임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중 문화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을 재고,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얻고, 사업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되어야 할 계획, 정책, 사업: 국비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국비를 확보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특히 문화시설, 콘텐츠사업 시설 및 단지 조성의 경우 문화영향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추진되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선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경우, 국비가 지원되어 왔던 사업들이 중지되는 경우들이 많음. 특히 문화콘텐츠, 축제와 같은 사업들이 대부분임. 다만 국비가 지원되었던 사업들 중 재고를 권고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공론화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봄

- 지역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전문가들이 제안한 세부 사업들은 그 종류가 다양함. 대부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사업들에 대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되어야 할 계획, 정책, 사업: 지역 단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진행하는 사업 중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적합한지 조사하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그 외 인구감소 및 지역발전전략의 변화에 따라 쟁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확대가 필요함
- 지역 단위의 관광개발사업은 꼭 문화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문화영향평가 의무화가 필요해 보임. 이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민의 삶에 밀접한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약식평가 수준에서 시행될 것을 제안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사업들은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로, 자체심사 및 사·도의뢰심사 대상 사업은 약식평가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시민참여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도 고민해야 할 것임

- 그 외에도,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연계 사업,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큰 사업,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역 개발 사업들 가운데 협의의 과정을 거쳐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도 있었음

4)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의 적절성

-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나 문화·관광·체육 시설 건립 사업과 같이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음
- 첫째, 전문가의 약 43%는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들은 주로 문화와 관련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간과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점검, 계획이나 사업의 주체들이 문화기본법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고, 문화 관련 사업들이 주도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함을 통해 평가를 알릴 수 있는 역할 기대 등을 이유로 꼽음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 문화와 관련된 계획이나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선도적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음
- 문화 관련 사업이라 할지라도 문화영향평가 지표 중 문화정체성(문화유산, 공동체), 문화발전 중 문화다양성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기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때론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큰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했으나, 평가를 통해 관련 계획이나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보다 선명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계획 수립이나 사업 시행의 주체들에게 문화기본법의 이념을 견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문화 관련 사업이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
- 문화 관련 사업들이 타 부처 사업에 비해 당연히 긍정적 영향이 높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사업 담당자들이 문화영향평가의 가치 지향을 내면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문화 관련 사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문화와 관련 있는 계획 및 사업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문화영향을 목적하는 사업이나, 의도치 않게 사업 취지 및 목적과 다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음. 그러므로 해당 계획들도 실제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지를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문가의 약 35%는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순 있겠으나, 제외할 대상, 혹은 꼭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평가 체계 또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문화와 관련 있는 모든 계획, 정

책,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봄. 또한 문화와 관련이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들 모두에 동일한 평가 체계를 적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화 관련 대상의 경우 별도의 평가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논함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나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 문화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어서, 문화영향평가 대해 부정적 영향 예측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므로 문화 관련 대상들은 문화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단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와 관련 있는 모든 계획, 정책,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대상의 범위나 필요성, 평가 기준, 지표 개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문화 관련 대상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엔 동의하나, 소규모 단순 문화시설 조성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그 외 제외 대상 기준 설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으나, 모든 문화 관련 사업이나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함
- 문화영향평가의 의미와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컨설팅이 아닌 말 그대로 '평가'의 의미로 접근한다면 문화 관련 대상들은 필요에 따라 선별되어야 함
- 점검 차원에서 문화 관련 사업들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겠으나, 모든 대상을 평가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 작업 실행이 필요하고, 문화적 영향에 대한 이해, 공감대, 준비 등을 구체화시키는 평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문화 관련 대상을 평가하는 것엔 동의하나,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문화만 보아도 관련된 세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존재함. 그러므로 사업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유형을 어떻게 나누어, 각 유형별로 어떻게 평가를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 셋째, 전문가의 약 22%는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는 이미 문화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중복성, 그로 인한 평가의 실효성 문제, 타 분야 대상과의 비교를 놓고 볼 때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였음

**문화와 관련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전문가들의 의견**

- 이미 해당 사업들은 계획수립 시 문화영향평가가 추구하는 관점들을 갖고 추진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쩌면 과도한 문화적 공급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문화 관련 사업에 굳이 문화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비문화 분야의 사업과 문화 관련 사업 간에 문화에 대한 영향의 양태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함. 환경영향평가도 비환경분야의 사업에 환경적 효과를 측정하듯이, 문화영향평가도 비문화 분야에 문화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하다보면 항상 평가 결과가 뻔하게 나옴. 그러므로 문화 관련

대상 평가엔 반대함. 차라리 문화 관련 대상들을 평가하려 한다면 별도의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정책을 만들 때는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화 관련 대상들은 이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생각함. 그런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문화 관련 계획, 정책, 사업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타 분야 대상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와도 공정성에 위배됨. 문화 관련 대상에 대해 문화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되려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대해 스스로 불필요한 비판과 확산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다수의 전문가 문화 관련 대상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동의하였으나, 다양한 문화 관련 대상 가운데에서도 문화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정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임
- 또한 형평성과 평가 필요성 등의 문제와 연결해볼 때, 문화 관련 대상과 타 분야 관련 대상을 동일한 체계의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임. 이것은 결국 평가대상 규정의 문제를 넘어 유형별 평가 수행 체계의 다양화와 같은 논의로 확대되어야 할 사항임

4. 종합 결과

- 현황조사 및 전문가 서면조사의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현황, 그리고 해당 대상을 「문화기본법」 상에서 규정할 때 근거가 될 내용 등을 정리한 표는 <표 3-6>과 같음

<표 3-6>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현황 및 대상 규정 시 근거

| 대상 | 현황(2022년 9월 기준) | 대상 규정 근거 |
|--------------|--|--|
| 제·개정 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2,738건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감안 | 한 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 법정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건(2023년 수립 예정)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감안 | 법률에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
|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15건 • 지방재정투자심사: 44건 • 중앙의뢰심사: 총 77건 |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

| 대상 | 현황(2022년 9월 기준) | 대상 규정 근거 |
|-----------------------------|--|--|
| | |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
|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23건 • 지방자치단체: 1,018건(도시개발 사업 601건, 도시재생사업 417건)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도시개발사업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한 도시재생사업 |
| 문화·체육·관광 시설 건립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57건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 49건 |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 |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 (문화도시 조성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도시: 67곳 • 기존에 심사를 위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79건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

- 다만,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의무화 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 (국가) 주요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대상을 사업 단위로 규정할 경우 사업의 변화에 따라 법의 잦은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개별 대상의 열거와 함께, 기타 사항으로 규정되는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도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이 수요를 반영한 평가체계도 함께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제2절 문화영향평가 수행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가. 평가 대상 설정

- 「문화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포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의 선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상의 문화영향평가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시행령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목적과 대상이 전치되어 해석될 우려 제기
 - 광범위한 평가 대상 중, 정책소관기관의 요청이나,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에 의해서만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문화영향평가 자체가 시행될 수 없음을 시사
- 이에 따라 평가대상 모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 및 의원발의안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문화기본법」 조문에 다음과 같이 직접 명기하여 구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② 법률에 따라 5년 주기 이상의 기간으로 수립하는 계획
 - ③ 대규모 예산사업으로서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등

- ④ 도시의 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명시한 도시재생사업 등
- ⑤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으로서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근거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신축 건립 사업 등
- ⑥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그러나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조문 명기는,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대상을 사전에 예측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폐지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내포
- 따라서, 기존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평가 대상에 법령·계획·사업단위의 구체적 대상을 함께 명기하여 평가 범위는 확대하면서 필수 대상은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법령상 명시한 필수 대상에 대한 평가는 의무화
 - 그 외 대상은 정책 소관기관의 신청 및 협력체계의 협의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평가대상 선정 체계 마련

〈표 3-7〉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구분(안)

| 대상 | 필수 대상(의무) | 가능 대상 (신청 및 협의) |
|----|----------------|--|
| 법령 | 제·개정 법령 | 현행 법령 |
| 계획 | 5년 주기 이상 법정 계획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수립하는 제 계획 |
| 사업 |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지방투융자 심사 등의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 |
| | 도시개발 또는 재생 사업 | 법정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외의 사업 |

| 대상 | 필수 대상(의무) | 가능 대상 (신청 및 협의) |
|----|--------------------|---|
| | 문화·체육·관광 시설건립 사업 | 현행 법규상 문화·체육·관광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 사업 또는 증·개축 사업 예) 창작공간 조성사업 |
|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 사업 | |
| 기타 | |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 계획, 법령 간 그룹화하여 대상화 가능 |

나. 평가 제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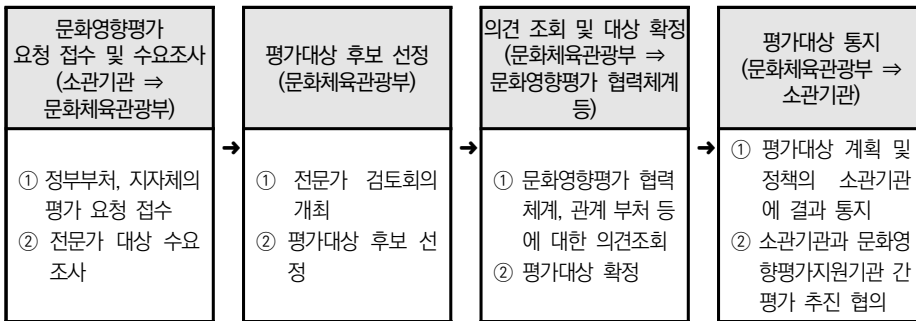
-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성평등 관련 정책 자체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문화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의 정의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같은 법에서 추구하는 이념이, ‘문화의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개인이 문화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화관련 정책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문화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 대상 법령, 계획,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대상 법령, 계획,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평가 수요의 반영

- 현행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기반하여 운영함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실시
-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은 수요조사, 평가대상 후보선정, 의견조회 및 대상 확정, 평가대상 통지의 4단계로 운영되는데, 수요조사 단계에서 정책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체크리스트 방식의 사전 검토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 신청을 위한 사전검토서는 문화 관련성(공공문화정책과의 관련성,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 경제적 효과), 공공성, 평가결과 환류에 대하여 3점 혹은 5점 척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평가대상 및 평가유형을 선정

[그림 3-1]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일반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 이 같은 수요 기반 평가 운영 방식은 규범적 평가라는 문화영향평가의 특성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향식 평가로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목적에도 정합하므로 유지 필요
- 또한 피 평가기관의 자체 수요 외에도 일반국민, 전문가 대상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마련이 필요함

2. 평가수행 절차와 결과 환류

-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가 수행하는 자체 평가와 전문적인 제3의 기관이 수행하는 전문평가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평가심도와 방법에 따라 진단, 약식, 기본/단계별, 심층/전략의 6가지로 세분되어 있음
- 평가수행 절차는 평가유형별로 세부 내용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계획 단계, 사전준비단계, 평가진행단계, 결과 도출 및 환류 단계로 구분됨

〈표 3-8〉 문화영향평가 평가과정 및 주요내용

| 과정 및 절차 | | 평가과정 및 주요내용 | | | | | |
|----------------|--------------|--|---------------------------------------|--|---|----------|--|
| 사전 준비 단계 | 평가계획 | 평가추진계획 구성 / 협의 / 확정 | | | | | |
| | 수요파악 | 수요조사 공시 및 수요접수 진행(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사전검토 | 수요조사 접수결과, 제안서 및 사전검토서 검토·확인 수요검토 결과 및 사전검토 결과 도출(문평대상여부/ 평가유형 판단 포함) | | | | | |
| | 평가협의 | 평가대상별 평가유형 및 수행방식 협의 및 확정 [진단 / 약식 / 기본(단계별) / 심층(전략)] | | | | | |
| | 평가수행 주체선정 | 평가수행주체 결정 및 계약 | | | | | |
| 평가 진행 단계 | 사전교육 |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워크숍(착수단계 설명 / 평가위원 섭외 / 평가지침 배포) | | | | | |
| | 평가운영 | 단계 구분 | 진단평가 | 약식평가 | 기본평가 | 심층평가(전략) | |
| | | 평가 준비 착수 보고 | 평가서 양식 배포 가이드라인 제시 (소관기관) | 평가서/검토양식 배포 - 가이드라인 제시(→소관 기관/검토위원) - 사전진단결과 활용 (→소관기관/검토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착수보고 - 평가추진계획 및 세부내용 최종 확정 | | |
| | | 검토/ 분석 단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분석 : 평가대상 관련 자료분석(사업계획서 등) 추진현황 및 지역 현황 분석 • 문헌 분석 :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 | |

| 과정 및 절차 | | 평가과정 및 주요내용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조사 : 평가대상 관계자 의견 수렴 현장조사(최소 3회 이상) |
| | 지표 설계 단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요인 파악 및 영향 예측 - 이슈 도출 및 영향의 식별 - 스코핑 실시 : 지표 및 평가방법론 확정 |
| | 평가 진행 단계 1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소관기관→문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소관기관→문체부) · 기초검토 진행 (각 검토위원별) · 현장조사(지역별1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직업 진행 - 현황의 해석 - 현장조사 - 관계자 FGI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직업 진행 - 현황의 해석 - 현장조사 - 관계자 FGI 등 · 설문조사 |
| | 중간 보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필요시) · 중간보고 (설문결과 포함) |
| | 평가 진행 단계 2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직업 진행 - 전문가평가 - 의제 도출 |
| | 평가 결과 작성 | 확인요건 전달 (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결과서 작성 (각 검토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해석 및 정책제언 도출 - 지표별 결과해석 / 전문가평가결과 / 정책제언 도출 | |
| | 최종 보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보고 : 최종결과 제시 / 정책제언 |
| 결과 도출 단계 | 결과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서 및 평가서 제출 - 자체 : 진단 검토의견서 및 약식 평가서 제출 (검토위원 혹은 평가수행기관→문광연→문체부) - 전문 : 기본/심층 평가서 제출 (평가수행기관→문광연→문체부) | | | |
| | 결과통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및 평가결과 최종 확정·통보(문체부→소관기관) | | | |
| 환류 단계 | 결과환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결과(예정) 공문 제출(소관기관→문체부) | | | |
| | 지속환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류 모니터링(필요) / 과정평가·결과평가 연결(필요) | | | |

-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은 추진계획과 평가유형별 평가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류체계 마련이 요구됨
- 이에 의원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상 환류체계를 조문에 직접 명시하여 의무화 하고자 하였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정책의 보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3절 문화영향평가 수행 체계

1. 문화영향평가 수행 구조

가. 평가 참여 주체

1) 평가 시행 총괄기관

- 현재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에 따라 볼 때, 문화영향평가의 전반적인 시행에 관한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였음
 -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은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항, 제3조, 제4조에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인 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안내, 평가 시행 및 결과 통보, 평가 협력체계 운영, 문화영향평가 수행 관련 교육,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평가 지원기관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임
 - 위 지원기관은 2017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29호) 제2조에 따라 지정되어 있음
 - 현재 지정 고시 제2조에는 ‘1.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문화정책 조사 연구 전담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명시함
 - 다만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지원기관의 기능

을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기관의 역할,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평가 요청 및 수행자(기관)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볼 때, 평가 요청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문화영향평가 협력체제로 볼 수 있음
 - 위 주체들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과 정책에 있어 평가를 요청하거나, 주체 스스로의 필요로 인해 평가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통해 평가할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포괄적으로 평가수행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정함
- 하지만 실제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유형에 따라 평가수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자체평가(진단, 약식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에 대해 해당 계획·정책 소관기관 담당자가 스스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자체평가 유형에서 평가수행자는 평가 대상 계획·정책 소관기관 담당자임
 - 전문평가(기본(단계별), 기본, 심층, 전략평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신하여 전문성을 지닌 제3의 전문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여기서 제 3의 전문기관은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연구기관 등이 있음
- 위에 열거한 문화영향평가 수행 주체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평가결과 검토, 심의자

- 현재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는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절차나 검토 주체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문화영향평가 수행 절차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주체가 존재함
 - 자제평가 중 진단평가는 전문가 검토위원이, 약식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평가 대상 정책 소관기관 담당자들이 작성한 평가서를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음
 - 전문평가의 모든 유형은 제3의 전문 평가수행기관의 평가 수행 과정 및 결과 등을 검토, 심의,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을 평가 건 당 3~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 해당 전문가 심의위원들은 평가수행기관이 착수, 중간(필요에 따름), 최종보고회 때 공개하는 평가 내용들을 검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5) 평가결과 통보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정함. 즉 평가결과의 통보는 평가 시행 총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이자 책임 역할로 볼 수 있음

6) 협력체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289호, 2016)에는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구성, 협의사항(기능), 회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구성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함
 - 협력체계의 기능이자 협의사항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음. 구체

적으로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표 3-9〉 평가 참여 주체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 구조 및 법령 현황

| 참여 주체 | | 기능, 역할 | 근거 |
|--------------------|--|--|--|
| 평가 시행 총괄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안내 평가 시행 및 결과 통보 평가 협력체계 운영 문화영향평가 수행 관련 교육 지원기관 지정 | 「문화기본법」 제5조 제5항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 평가 지원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영향평가 지원' 으로서 포괄적으로 지정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지원기관의 기능으로 정하지 않음) | 단순한 '문화영향평가 지원'에 대한 기능만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에 포함 |
| 평가 요청 기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영향평가 협력 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 평가 요청 2)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를 요청 3) 협의를 통해 평가하기로 결정하여 평가를 요청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 평가 수행자 (기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체평가: 계획 및 정책소관기관 담당자 전문평가: 제3의 전문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소관기관 담당자가 평가 대상에 대해 스스로 검토, 평가 전문평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신하여 전문기관이 평가 | 포괄적 주체에 대한 내용만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포함, 구체적 주체에 대한 사항은 없음 |
| 평가결과 검토, 심의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전문가 검토위원(진단), 전문가 평가위원(약식) 전문평가: 전문가 심의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검토(평가)위원: 정책 소관 기관 담당자들이 쓴 평가서를 검토하고 정책적 제언을 포함한 의견서 작성, 제출 전문가 심의위원: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평가 과정 및 내용, 결과 등을 심의 | 없음 |
| 평가결과 통보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 참여 주체 | | 기능, 역할 | 근거 |
|-------|-------------|--|---|
| 협력체계 |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그 외 필요한 사항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2. 평가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

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현황

- 앞서서도 밝혔듯이,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2017년 지정 고시에 의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함
 - 평가 지원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과 관련하여,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한 「고용정책 기본법」의 경우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하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평가기관 지정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함

「성별영향평가법」의 평가기관 지정 및 기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제1항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4항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9. 18., 2018. 8. 14.>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하지만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는 지원기관의 기능, 역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신하여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권한,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지원 업무가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향후 평가 대상의 확대, 제도의 확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평가체계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위해서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의 기능, 업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식화시켜야 할 필요가 클 것임

나.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평가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선 방안

- 김면·이경진·김윤경(2020)의 연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제안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2항으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문화영향평가 평가전

담기관)의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준, 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함

- 특히 평가전담기관의 기능 및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이 아닌 평가지표, 평가방법 연구 및 개발, 평가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가 전담기관의 주요 업무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 역할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을 주장함(김면·이경진·김윤경, 2020)
- 그 외 평가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킴

〈표 3-10〉 선형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전담기관 지정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개선 방안 | 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규정 신설</p> |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 전담기관</p> <p>제4조의2(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지표개발 등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 3.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경력 2. 문화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자료: 김면·이경진·김윤경(2020), p.127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제4장

문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1절 「문화기본법」 개정 방향

1.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정책의 보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문화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표 4-1〉 「문화기본법」 개정안 구성 체계

| 구분 | 현행 | 개정안(주요내용) |
|------|-----------------------|--|
| 제1조 | 목적 | |
| 제2조 | 기본이념 | |
| 제3조 | 정의 | |
| 제4조 | 국민의 권리 | |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p> |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7조 |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 |
| 제8조 |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13호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제8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4호 그 밖에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9조 |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 |
| | | 제9조의2. 문화영향평가 대상 |
| | | 제9조의3.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 | | 제9조의4.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 |
| 제10조 | 문화인력의 양성 | |
| 제11조 |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 |
| | 제11조의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 |
| 제12조 | 문화행사 | |
| | 제12조의2 국회보고 | |
| 제13조 |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
| | 제13조의2 과태료 | |

가. 문화영향평가 실시

- 현행 「문화기본법」 제5조4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정책과 계획’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를 함께 명시하여,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권 신장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함

〈표 4-2〉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실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 |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자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삭제〉</p> |

나. 문화영향평가 운영 계획(문화진흥 기본계획으로의 포섭)

- 문화영향평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므로,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을 포함토록 하여, 문화영향평가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체계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표 4-3〉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운영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 | <p>(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p>(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모호하게 명시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 밝힌 문화영향평가의 포괄적 대상(각종 계획, 정책) 중에서 필수 대상을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 문화영향평가의 구체적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시 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를 통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가능하게 하여, 대상사업으로 열거되지 않은 각종 정책(법령, 계획, 사업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함

- 문화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평가가 필요 없거나 평가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대상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대상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4-4〉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p>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도시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④ 제2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라.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평가 이후 도출된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법률로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정책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표 4-5〉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p>제9조의3(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법령 제·개정안, 계획 또는 사업(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서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대상 정책등에 반영한 결과(이하 “반영 결과”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정책등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서 및 반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마.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원기관의 기능, 역할, 권한,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필요함
-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연구기관
- 평가전담기관의 업무 및 지정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표 4-6〉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연구기관 ② 평가전담기관의 업무,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문화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1.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 4-7〉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구성 체계

| 구분 | 현행 | 개정안(주요내용) |
|-----|-----------------|--|
| 제1조 | 목적 | 좌동 |
| 제2조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 기본계획의 수립 |
| 제3조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 시행계획의 수립 |
| 제4조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현행 제2조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규정안을 마련함) |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 문화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교육 등 (기존 제4조를 제6조로 이동하면서 함께 검토하여 규정안 마련) |
| 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 | 문화의 날 행사 등 |
| 제8조 | 문화의 날 행사 등 | 제7조로 이동 |

- 「문화기본법」상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구성 체계를 위와 같이 제안함
 - 계획수립 관련 사항을 조문의 앞으로 상항 이동하여 배치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법률안의 위임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리함
- 「문화기본법 시행령」은 전부개정으로 추진함

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 「문화기본법」 개정안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시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의 범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
- 도시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문화·체육·관광시설 건립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같은 조 제17의2호 중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건립 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설치·건립 사업
- 이외에도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문화체육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등이 있음

〈표 4-8〉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p>현행 제2조 / 개정 제4조</p> | <p>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p> | <p>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 <p>②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 또는 재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p>③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건립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같은 조 제17의 2호 중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3.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 목에 따른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설치 건립 사업 <p>④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문화지구를 포함한다.</p> |

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 현행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규정은 법률 상 근거를 갖도록 상향하여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규정을 삭제함
- 필요한 사항은 법률안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둠(위임은 현행 시행령 제3조와 동일)

〈표 4-9〉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3조 | <p>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삭 제〉 |

다. 문화영향평가의 전담기관 지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규정함
 - 문화영향평가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지표개발 등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영향평가 수행 조직을 갖출 것
 -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 또는 업무 경력
 - 문화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표 4-10〉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전담기관 지정 등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4조 / 개정 제5조 | <p>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p>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4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영향평가 추진 및 촉진을 위한 지표개발 등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업무 수행 경력을 갖춘 것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라. 문화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교육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문화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함 - 문화영향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표 4-11〉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교육 등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4조 / 개정 제6조 |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제6조(문화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문화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 정보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표 4-12〉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성 체계

| 구분 | 현행 | 개정안(주요내용) |
|-----|-----------------|--------------------|
| 제1조 | 목적 | 좌동 |
| 제2조 | 의견청취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제3조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구성 체계를 위와 같이 제안함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으로 추진함

가.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협력체계를 다음의 기관 및 단체와 구축·운영함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

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체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협력체계를 통해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협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표 4-13〉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현행 제3조 / 개정 제2조 | <p>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9.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 <p>제2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3.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체계를 통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p>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 | <p>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협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

나.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서와 반영 결과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문화영향평가결과서와 반영 결과에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음

〈표 4-14〉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p>현행 제2조 / 개정 제3조</p> | <p>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 <p>제3조(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반영 결과에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p> |

제3절 추진 방안

1. 기대효과 및 개정 절차

가. 개정 기대효과

- 「문화기본법」과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문화영향평가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구체성과 환류체계 마련 등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함
-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대상을 함께 적시함으로써, 필수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평가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법에 조문으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문제시 되었던 평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규범과 문화정책 대상을 범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만큼, 문화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조문에 포함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며, 평가전담기관의 역할과 지정기준을 설정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식도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요와 평가 필요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협의에 의한 방식을 유지하며, 문화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함

나. 개정 절차

- 정부입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표 4-15〉 정부입법의 개정 절차

| 입법과정 | 소요기간 | 주요 내용 |
|----------------|-----------|--|
| 법령안의 입안 | 약 30~6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결정 후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한 법령안을 입안 |
| 관계기관 협의 | 약 10일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 입안 후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침 |
| 사전영향평가 | 약 15일~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성평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 •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등이 있음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 경우, 이 단계에 포함되어 실시 |
| 입법예고 | 약 40~6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고하고, 그 밖에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알림 |
| 규제심사 | 약 15~2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음 |
| 법제처 심사 | 약 20~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 |
| 차관회의 심의 | 약 7~1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
| 국무회의 심의 | 약 5일 | |
| 대통령 제가 및 국회 제출 | 약 7~1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제가 |
| 국회의 심의·의결 및 | 약 30~6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 |

| 입법과정 | 소요기간 | 주요 내용 |
|----------|---------------|---|
| 공포안 정부이송 | (국회일정에 따라 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 국회에 제출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 |
| 국무회의 상정 | 약 5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 |
| 공포 | 약 3~4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 |

출처 : <https://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자료 재가공

2. 후속과제

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수단으로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상의 문화진흥계획의 구도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정계획에 준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되어야 함
-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5개년 달성목표를 기준으로 수립·운영됨이 바람직함
 - 계획 수립의 배경 : 문화영향평가의 위상과 범위, 평가유형의 구분 및 유형별

특성, 평가 환경 분석 및 전망 등

- 계획 기본방향 : 문화영향평가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평가의 기본방향 등
- 실행계획 : 전략별 추진방안, 세부 실행계획, 평가결과 환류, 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 협력체계 및 교육·홍보 : 평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평가수행기관 관리, 전문가 평가위원 관리·운영, 문화영향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지원,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지역별 발전 방안 등
- 정보화 및 인력양성 : 문화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운영,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등

나.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 유형을 심의·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법률」 제 5조에서는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 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 중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법」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 등이 있음
- 문화영향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설치·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행정기관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법률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설치가 가능함
 - 예로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2조에 의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또 다른 예로 부령인 「농림어업총조사규칙」은 제16조에 자문위원회 규정을 두어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이나 문화영향평가의 특성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게 되므로 시행령으로 규정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 가능

다. 「(가칭)문화영향평가법」 제정

-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하여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문화기본법」의 하위법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은 개별법으로서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절차, 방법, 환류,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전담 기관, 정보화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음
- 예로 성별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성별영향평가법」도 제3장 제18조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표 4-16〉 「성별영향평가법」 구성 체계

| | | | |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제2조 정의 | | 제13조의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및 임무 |
| | 제4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 | 제15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
| 제2장 성별영향평가 의 실시 |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 |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
| |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 제17조 성별영향평가기관 |
| |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 수집 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
| |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등 | | |
| |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반영 | | |
| |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 | |
| |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정성별영향평가 | | |
| | 제11조 정책 등 개선권고 의견표명 | | |
| | 제12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 |

참고문헌

학술 논문 등

- 김종호(2019),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105-134.
- 장인호. (2021). 문화영향평가의 개별법률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2), 295-329.
- 한승준 외(2016).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5(2): 337-361.

단행본·보고서 등

- 고용노동부(2021). 「2021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국민권익위원회(2021),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 김면 외(2020).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연진(2013).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선영(2011),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박선영(2013).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양혜원(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이상열 외(2018).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열 외(2018). 『문화영향평가 관련 국외 동향 및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열 외(2019).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차현숙(2014).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차현숙(2017).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II-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등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자료실, 부패영향평가 <https://www.acrc.go.kr>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s://pimac.kdi.re.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https://www.kipf.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https://limac.krila.re.kr>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https://lomac.lofa.or.kr>
- 국토교통 통계누리, 도시개발사업현황 <https://stat.molit.go.kr>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2022).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문화영향평가 진단평가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문화영향평가 약식평가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문화영향평가 기본평가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문화영향평가 전략평가 지침
- 법제처 (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

ABSTRACT

A Study on the Amendment of Ordinance for th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Kim, Youn Jin

Article 5(4)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enacted in 2013 specifies the basis for carrying out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s “spreading cultural value throughout society following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ultural impact assessment)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in the event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various plans and policies.”. However, the current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said act do not provide specific regulations for all stages of assessment, from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to feedback on the results. Therefore, it has been being pointed out that a systematic assessment is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 several amendments to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were announced to expand the subject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nd systematize the assessment process. However, for various reasons, such as being delayed, not being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levant bill being repealed at the end of the term, etc., none of these have resulted in an actual amendment to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direction and specific details for the amendment of Fundamental Act on Culture, including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sophisticated design of those types and procedures in the future, so that cultural impact assessments can be carried out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reviews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from its enactment in 2013 to the present and the reasons for revision in chronological order; partial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which were preannounced in 2018; and the amendments proposed in December 2020 by two congressmen.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f pending and current issues in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composition of the main detail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ubjects,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a written survey of 38 experts, and a plan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ultural impact assessments.

The issues and points in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related laws that emerged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are: 1)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does not specify the subject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while the enforcement decree specifies such subjects as cases where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plans and policie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spread of cultural valu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re to be carried out at the request of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or after consultation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2) The current assessment types have been developed and introduced as needed, but problems such as weakened understanding and accessibility due to their complexity have been pointed ou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lear legal regulations on the method of reflecting the result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nd checking the implementation of such as well as continuous monitoring of whether the target projects are being pursued. 3)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and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aid act stipulate that if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deemed necessary, an institution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may be designated as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support organization; and since details o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institution are not specifie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official role of support institutions and the scope of assessment work are ambiguous.

In order to supplement the above issues and points, this study suggested major contents and directions for an amendment to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assessment subject, assessment system, and designation of an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assessment. Ultimately, it should be asserted that an amend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for th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must aim for the following: 1) to stipul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pecify 'when to enact and amend laws and regulations' along with policies and plans so that the subjects and scope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can be expanded; 2) to incorporate an operational plan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s into the basic plan for cultural promotion; 3) to specifically stipulate the subject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which are vaguely specified in the decree as cases where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plans and policie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spread of cultural valu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n the law, which is upper level than the decree ; 4)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assessments by specifying in detail the essential subjects among the comprehensive subjects (laws, plans, policies) stated in Article 5, and to work towards enabling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ccording to necessity by stipulating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an directly conduct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the case of a project determined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that is promoting the target project; and 5) to regulate the feedback system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s by law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Furthermore, through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 of said act, the subject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s should be further specified by law, and the roles and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institution in charg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cultural impact assessments can be carried out smoothly. At the same time, the method of selecting a cultural impact assessment subject should remain consultation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so that both the

demand and the need for cultural impact assessments can be reflected in law, and the cultiv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related experts and an information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Keywords

Cultural impact assessment, Fundamental Act on Culture, amendment of ordinance, subject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집필내역

연구책임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제1장,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 제4장, 연구총괄

연구진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제1장, 제2장 제2절, 제3장 제1절, 제3절

연구 자문

〈특별원고자문〉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본부장

〈전문가 서면자문, 가나다 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원 인하대학교 교수
김선형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주 추계예술대학교 연구교수
김준호 (주)프로젝트이안 대표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길지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류성호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모형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팀장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성보현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송정은 (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위촉연구원
신상화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윤지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훈 창원대학교 교수
이성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연구센터 대표
장석류 시애틀파트너스 이사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욱 도시공공환경연구원 대표
정낙현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정선기 충남대학교 교수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정정숙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부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2팀 팀장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최정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우 경남연구원 조사연구위원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구 참여

유은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BK21 FOUR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2월 05일

발행일 2022년 12월 05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48-2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30>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연진·김윤경(2022), 문화영향평가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30>

